

#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~32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8. 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- '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부서 명칭변경

## 2. 주요내용

-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를 낫표(「 」)를 사용하여 구분하게 함(안 제1조).
  - ⇒ “정보화촉진기본법”을 “「정보화촉진 기본법」”
    - “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”을 “「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”
    -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개정
- '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부서 명칭변경(안 제10조제3항).
  - ⇒ “정보통신담당주사”를 “정보화담당주사”로 개정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」,  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없음
- 다. 기 타
  - (1)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  - (2)입법예고 : 생략

거창군조례 제 호

##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”를 “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정보화촉진기본법”을 “「정보화촉진 기본법」”으로 “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”을 “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중 “정보통신담당주사”를 “정보화담당주사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정보화촉진기본법,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</u>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<u>정보화촉진 기본법</u>」, 「<u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」 및 「<u>지방자치법</u>」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<b>제10조(구성) ①~②(생략)</b>            ③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정보통신담당주사</u>가 된다.            ④협회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 촉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</p>	<p><b>제10조(구성) ①~②(현행과 같음)</b>            ③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정보화담당주사</u>가 된다.            ④협회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 촉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</p>